2020학년도

학부모 연수 자료



만 경고등 학교

54307 전라북도 김제이 만경읍 능제로 29번지

• ^교망일 : 544-5733

• 행정일 : 542-5711

• 교무일 : 542-5722

• FAX : 543-6077

http://www.mankyung.hs.kr

사이버 성범죄 대응 교육

□개요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피해 예방 등 적시 대응을 위해 피해 대응요령 및 예방교육 안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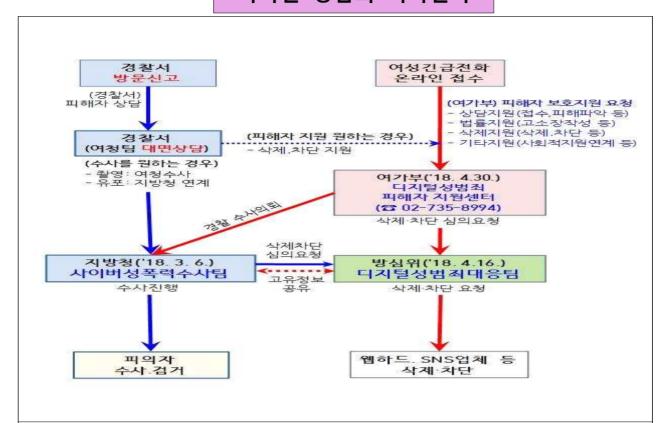
□ 안내 자료

- 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 (카드뉴스) 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등 접근성을 고려한 카드뉴스 형태의 예방교육자료
 - **(영상자료) '젠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듀넷 티클리어**'(교육부)와 같 은 온라인교육 플랫폼 내 교육자료 목록
 - (교육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자료 (http://shp.mogef.go.kr) 링크 공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물 및 사건처리 절차ㆍ피해자보호 지원체계 안내

【홍보자료 및 처리절차】



<디지털 성범죄 처리절차>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방법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안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예시]

카드뉴스	◆ 경찰청,「사이버 성폭력 예방」카드뉴스 (붙임파일 참조) ◆ 「디지털 성범죄 시례 및 수법」및「학부모가 알이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출처:'딱따구리'http://mblog.naver.com/woodpecker_official/221868564271)
영상자료	① 제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genderon.kigepe.or.kr/)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콘텐츠(예시) - 양성평등을 위한 카드뉴스 '클릭하지 마세요' -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김남훈)' 세바시 910회 • 그 외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SNS성희롱 키워드로 컨텐츠 검색 및 활용 가능 ②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 예방 활동자료 > 예방 동영상에서 관련 동영상 활용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콘텐츠(예시) -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동영상「허락」 40초 편집본 - '(성폭력)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이 선희)' 세바시강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카드뉴스 자료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예방 **조심해야** 할 것

-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 사이버성폭력 예방

이렇게 행동해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합성영상 유포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 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 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Rightarrow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Rightarrow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 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 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 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 하고 있습니다.

O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O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 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O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 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전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063-280-8133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063-280-8149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전문상담 기관 안내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완산구)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완산구)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주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월명동)	442-1570	개인
1 TT	로뎀 성폭력 상담소(미원동)	445-9192	개인
	익산 성폭력 상담소(남중동)	834-1366	개인
익산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수사 및 치료 통합지원)	859-1375	원광대병원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수성동)	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남원	남원 YWCA(향교동)	625-1316	사)남원 YWCA통합상담소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선행학습 폐해 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O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O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 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 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O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위기학생지원 종합대책(요약) 전라북도교육청

※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

1. 비전·목표·기본 관점

비전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축

목 표

- ⊙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 ⊙ 통합적이며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학생 지원 강화

기 본 방 향

- ⊙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부적응 학생 최소화 대책 수립, 지원
- ⊙ 교육력 회복과 향상을 지원하는 대책 수립, 지원
- ⊙ 학교폭력예방과 고 위기학생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 ⊙ 고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강화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 기본관점

- 교육 공동체 간 단절을 넘어선 관계, 처벌을 넘어선 회복, 통제를 넘어선 자 치 중심의 지원 강화
- 사안처리와 사후관리 중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넘어선 관계·회복·자치중 심 교실과 학교문화 혁신
-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지원
- ⊙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 강화
- ⊙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2 주요 분야 및 중점과제

영역	5대 분야	중 점 과 제						
		1 관계·회복·	자치중심 생활교육 강회를 위한 연수 지원					
	1 1	2 3월, 평화	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관계·회복·자치중심의 평화로의 화교무화	3 담임중심, 3	회복적 생활교육 및 상담역량강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4 학교문화 학	혁신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확대					
학		5 인성교육을	분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교 폭		6 학교폭력임	당 교사 수업시수 경감					
력		7 학교폭력대	책위원 전문성 향상 지원					
예	│	8 교육력 회	복 중심 분쟁조정과 사안처리					
방 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9 사이버폭력	이 예방 대책 강화					
책		10 교육력 회	복중심 법령개정					
	3 피·가해 학생	11 Wee프로전	트 기관 위상과 역할 강화					
		12 상담·치유· <u>호</u>	회복 관련 연수 지원 강화					
	상담 치유 회복 강화	13 피해·가해혁	학생 지원 외부기관과 소통과 협력 강화					
		14 학교-지역정	청-도교육청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위 기	4 자살(해), 성 사안 등	15 위기 개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학	위기개입 역량 강화	16 정서행동 특	특성 검사 사후 관리 강화					
생 지 원 대 책		17 위기학생 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					
	5	18 고위기 학생	생 지원을 위한 자문의사단 구성, 운영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운영	19 학업중단 =	숙려제, 보호관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20 내실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학교폭력예방·위기학생지원 종합대책(요약)

- 5대 중점과제/20개 세부과제 -

중점 과제	세 부 추 진 과 제	비고
	1. 관계·회복·자치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내실화/개선
	2. 3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세움 주간 운영(3월) →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내실화/확대
관계·회복·자치중심의	3. 담임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및 상담역량강화	확대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4. 학교문화 혁신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 확대	내실화/확대
	5.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내실화/확대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배움터 자원봉사자(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회복무요원 배치 ·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 ·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운영	내실화/개선
2	2. 학교폭력 사안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학교폭력 담당교사 역량강화 지원(학폭 담당교사 수업경감)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지원	내실화/확대
교육력 회복 중심 학교폭력예방과	3. 교육력 회복 중심으로 분쟁조정과 사안처리 · 담임해결, 전담기구 해결 사안처리 지원 · 교육력 회복 중심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구성·운영(20명 이내)	내실화/확대
대책	4.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 강화 · 사이버 폭력 관련기관 협력 체계 강화 · 사이버 폭력 교육지원 거점형 위센터 운영 강화 · 사이버 언어폭력 대응 강화	계속
	5. 교육력 회복중심 법령개정 요구 → 법령 개정 예정(교육부)	신규/계속

중점 과제	세 부 추 진 과 제	비고
	1. Wee 프로젝트 기관 위상과 역할 강화 · 위기학생 상담 및 치유, 심리치료 연계 강화 · Wee센터 전문인력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활성화	내실화/개선
3 피·가해 학생 상담·치유·회복	2. 상담·치유·회복 관련 연수 지원 강화 · 신규 및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위기사안 역량강화 연수 지원 · 문제유형, 상담매체, 상담목표 별 연수 지원 ·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 이해, 소통의 상담연수 지원	내실화/개선
강화	3. 피해·가해학생 지원 외부기관과 소통과 협력 강화	내실화/확대
	1. 학교-지역청-도교육청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내실화/확대
4 자살(해), 성 사안 등 위기개입 역량 강화	 2. 위기 개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Wee센터 자살(해), 성 사안 사후관리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 위기관리 특화 Wee센터 운영 → 학교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매뉴얼, 프로그램 제공 	내실화/확대
271	3. 정서행동 특성 검사 사후 관리 강화 →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후 관리군 학생 현황 관리 철저 → Wee센터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고위험군 학생지원	내실화/개선
	1. 위기학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	신규
5	2. 고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자문의사단 구성, 운영	신규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운영	3. 학업중단 숙려제, 보호관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숙려 프로그램 운영 • 다수학생 학업중단학교 특별 관리 지원 • 보호관찰 멘토링 사업 운영	내실화/확대
	4. 내실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대안교육위탁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별 대안교육위탁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내실화/확대

교권보호 예방 교육

- 1. 교권과 교권침해의 이해
- 가. 교권의 개념 및 침해 유형

교권이란?

-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 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 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 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권침해란?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교권침해의 유형

구분	교 권 침 해 유 형				
	■ 교원에 대한 폭언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음L 시U	■ 수업 진행 방해				
학생	■ 교원에 대한 폭행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재물 손괴				
	■ 사이버 매체 폭력				
	■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에 대한 폭행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학부모	■ 사이버상에 교원을 비방 행위(카톡, 밴드 등)				
	■ 수업형태,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 비하하는 내용 유포				
	■ 고소·고발				
	•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 교원에 대한 폭언				
학교행정 관계자	■ 교원에 대한 폭행				
동료교사	■ 교원에 대한 협박				

※ 상기 유형은 예시 자료임

나. 교권보호의 목적

- O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협박 또는 성희롱·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敎權) 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교 권 보호적 학교현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지원
- O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O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으로 교육력 제고
- O ·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2. 교권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가. 학생지도와 징계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근거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설치 목적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
 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 역할
 - <u>교권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 기준 및 단위학교 조치내용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u> 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교권 분쟁 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위원 외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포함

- <u>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즉시 사안</u> 보고
- 3. 교권침해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 ※ 교권침해 유형은 학교급별, 학교종류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속성이나 빈도수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이것은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음

*학생 관련 사안

교권침해 유형		기준			조치	사항		
		심각	반성문 서만(과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교원호 위원회
가.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 앞에서 심한 욕설(반말)을 했을 때		0				0	\circ	
-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른 곳을 보며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0		0	0				
- 학생으로서 교원에게 말로 대들거나 신경질을 부렸을 때	0		0	0				
나. 교원에 대한 폭행								
- 교원 뒤에서 발길질이나 주먹질 하는 시늉을 했을 때	0		0	0				
-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교원이 맞았을 때		0					0	0
- 학생이 신체를 이용하여 교원을 밀거나 때렸을 때		0					\circ	0
- 교원의 멱살 및 목을 잡았을 때		0					\circ	0
- 교원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0					0	0
다.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고의로 교사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	0		0	0				
- 고의로 교사의 지도에 반항했을 때	0		0	0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기물을 차거나 던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0			0	0	0	0
라. 교원에 대한 위협								
- 교원이 맞지는 않았으나 학생이 주먹을 교원에게 휘둘렀을 때		0				0	0	0
- 교원을 도구로 때리려고 했을 때		0				0	\circ	0

	판단	기준			조치	사항		
교권침해 유형	경미	심각	반성문 서만(과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교건보호 위원회
- 교원을 흉기로 위협했을 때		0					0	0
마. 교원에 대한 성희롱								
-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나 농담을 할 때	0		0	0	0	0		
- 성적인 문자(영상)를 보내거나 성적인 사진 촬영을 했을 때		0				0	0	0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성추행)		0					\circ	0
바. 재물 손괴								
- 고의로 교원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0	0	0	0	0		
사. 수업 방해								
-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1회 할 때	0		0	0				
-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2회 이상 할 때		0			0	0	0	
-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방해할 때		0			0	0	\bigcirc	
- 수업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0		0	0				
- 수업 중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0		0	0				
- 수업시간에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0		0	0	0		
아. 사이버 매체 폭력								
-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 때		0			0	0	\circ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해 은어적 표현이나 욕을 했을 때 	0		0	0				
-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했을 때		0				0	\circ	
자. 명예훼손								
- 다른 사람에게 교원에 대해 거짓으로 없는 말을 퍼뜨렸을 때	0		0	0				
- 교원의 말을 좋지 않게 또는 비꼬는 흉내를 냈을 때	0		0	0				
- 째려보기, 껄렁거리기, 잘못이 확실함에도 아니라고 했을 때	0		0	0				
- 학생이 교원에게 장난전화를 했을 때	0		0	0				
- 교원에 대한 불온 낙서를 했을 때	0		0	0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상	항목 2019 2020		2020	개정사유
	제4조	· 신설	- (제4조)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기재	·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신설
훈령	제15조	(제5조) 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채", '성취교(수강자수)"	- (제(조)중학교 고과 '과목, '원진수(과목광균, '상취도(수강자수)'	· 학생의 서일학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면치' 삭제
	별표9	수행평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	· 수행평가: 과제형 수형평가 금지	학부모 사고육 개업 여지 최소회 및 학생의 평기부담 완화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군지사항 - 모의고사전국언합학태평가 성적또는 관련 수상실적 포함 - 논문·학회까 등지 - 도서 출간 - 발명특허관련 내용	- 기재공지사항 - 모되고사·중국연합학력당가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 학회 등 발표사실 모두 금지 - 도서명 출판시당과 관계없이 출간 사실 자체 - 지식재산권·특희, 실랑산언,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모두 가재 금계	· 사고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 급치 제칭 구체화
2007/202	기지요령안내	신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한·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압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해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촬영 가능 	학생부 대필 기준 제시
기재요령 (공통)	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신설	- 출석안정사례추가 - 경찰청관사의 선도드로그램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출결상황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 (호.중고) 당해학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가래학생조치사항 입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제1항 개1호 제 2호 제3호 제7호 조치사항 결정 즉시 입력	- (호,중,고) 당해학면 수업일수의	-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최)20일, (중) 30일 (고) 40일 ※ 학교장이 허가할 중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수용
		 가해학생조치사항 압력 유보 「학교폭력(예방업」,제17조제(항 제1호~제3호의 조치사항 이행시 압력 유보 후 동안학교급에서 다른학교폭력으로 조치 환을 경우 숙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가재 	· 강대한 학교목적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기재요령(초)	창의직제함 활동상황	· 조1 입착초기 작용활동 - '입학초기 작용활동'을 기재	- '압학초기 적용활동 을미기재	· 개인별 특기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미입력
	작성시 유의사항	· 신설	- 그동학교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여정)한 교통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대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있음 왕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실적의 강소 또는 주관기관명 제외	· 대단제도 공당성 강하 방안(16 ft) 적용
기재요령 (중·고)	창의적체험 횳동강황	· 지율함구활동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개 금지 (단 보고서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고과세록에 기재 ※2019학년도 중·고 1학년 해당	 자율탁구활동을 기재한 경우 필요한 조건 ○ 정규교육과정 이 수라정 ○ 사교육 개입없어야 ○ 학교 나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 ○ 증빙자료 보관 (학교교육계획서, 내부경제 학생활동 산활물) 	· 자율함구활동의기재 가능 범위와 용에 정비
	교과학습 별달상황	· 중·고등학교 교과세록 가지 범위 - 독기할 만한 사랑이 있는 과목 및 학생	- 그동학교 교과세독기자 받위 - (기호교과(군), 단구교리(군)) 코든 학생에 가지 - (그 외) 학업성 적판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력 다상 범위결정	· 고등학교에서 교회사목 필수기자 하는 범귀한내